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348 발의연월일: 2021. 11. 17.

발 의 자:이정문·김병기·김철민

도종환 • 문진석 • 민형배

변재일 · 신동근 · 안민석

이용빈 · 황운하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게 위법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시정조치 중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훼손된 시장의 경쟁을 빠르게 회복시키면서 사업자의자발적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실시명령, 통지명령, 보고명령등 작위명령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.

이 경우 작위명령 등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필요가 발생함.

이에 따라,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들에게 이행점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시정조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 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(제97조의2 신설)하고, 공 정거래조정원의 업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추가(제72조제1항제6호 신설)하며, 시정조치 이행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하고 형벌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(제119조 및 제123조제2항)하고자 함.

법률 제 호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의 이행관리

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7조의2(시정조치의 이행관리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, 제14조, 제37조, 제42조,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,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이행에 관련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19조 중 "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,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또는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

신설한다.

- 1.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
- 2. 제73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 거나 담당하였던 사람
- 3.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
- 4.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 였던 사람

제123조제2항 중 "제73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또는 제90조에 따른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73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 거나 담당하였던 사람
- 2.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
- 3.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법률 제72조(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 제72조(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 립 등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 립 등) ① -----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 거래조정원(이하 "조정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1. ~ 5. (생 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6.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<u>6.· 7.</u> (생 략) 7. · 8. (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) ② ~ ⑤ (생 략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97조의2(시정조치의 이행관리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. 제 14조, 제37조, 제42조,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 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 고,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 체에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19조(비밀엄수의 의무) 이 법 기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 사하였던 위원,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또는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이
따른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어
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에 위틱
할 수 있다.

제	119)조(비	밀엄스	누의	의	무)	다	<u>о</u> П
	각	호의	어느	하나	-에	해딩	}하	는

- 1.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

 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

 공무원
- 2. 제73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 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
- 3.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

 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

 당하였던 사람

<신 설>

- 제123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제123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① (생 략)
 - ② 제73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 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 람 또는 제90조에 따른 이행관 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 였던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 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 원으로 본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 4.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
- 의제)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----

- 1. 제73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 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
- 2.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 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 당하였던 사람
- 3.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